

경운대학교 교원성과평가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 「교원보수에 관한 특별규정」 제7조에 따라 교원의 성과(이하 “성과”라 한다)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대상) 이 규정은 「교원보수에 관한 특별규정」 제2조의 교원중 성과연봉제에 적용을 받는 자로 한정한다.

제3조(구분 및 정의) 교원의 성과는 교육, 산학 및 연구, 봉사, 대학발전,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 기여도 종합평가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한다.

1. 교육성과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와 교내·외를 통한 학생지도 등 제반 교육활동의 성과를 말한다.
2. 산학 및 연구성과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체와 교류한 실적 및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교내 또는 사회에 제공, 기여하는 봉사활동과 교원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창의적 연구 및 창작활동의 결과물, 수상실적 또는 교내에 기여한 연구의 성과를 말한다.
3. 봉사성과란 대학의 발전에 봉사한 교내외 보직, 위원회 등 활동 성과와 교외의 위원, 전문가 등 활동 성과를 말한다.
4. 대학발전성과란 대학의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유치, 집행, 운영 또는 정책제안 및 발전기금 기여 등의 성과를 말한다.
5. 재무적성과란 대학의 재정 운영에 기여한 교원의 전공분야나 소속학과의 재무적 성과를 말한다.
6. 비재무적성과란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교원의 전공분야나 소속학과의 발전(특성화) 계획 및 운영 성과를 말한다.
7. 기여도 종합평가란 대학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한 성과와 경쟁계 및 중징계 처분 결과를 반영한 성과를 말한다.

제4조(평가의 예외인정)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성과평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하반기 임용, 연구년, 휴직, 병가,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해 평가대상기간 중 한 학기 이상의 기간동안 정상적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2. 국외여행 또는 공무에 의한 출장 등으로 평가대상기간 중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교육, 산학 및 봉사업적 자료가 없는 경우
3. 차학년도 정년퇴임 교원의 경우

제2장 평가 절차

제5조(평가 대상기간) ① 성과평가는 당해년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의 업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년 1회 실시한다.

제6조(평가절차) ① 교원은 평가대상 기간의 성과에 대한 증빙서류를 매년 2월 25일까지 각 행정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행정부서장은 증빙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개인별 평정 점수를 기입하고 기획조정처장에게 제출하며, 기획조정처장은 개인별 평정 점수를 종합하여 순위를 부여한 뒤 교원성과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1.10.01.>

③ 교원성과평가위원회는 개인별 평정 결과를 심의 완료 한 뒤, 위원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획조정처장은 총장 승인후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1.>

제7조(교원성과평가위원회) 교원 성과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교원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따로 둔다.

①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과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심의
2. 교원 성과평가 결과 심의
3.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4. 기타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이의 신청 및 처리) 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조정처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단, 제18조의 이의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1.10.01.>

② 위원회는 평가 및 소명자료를 재검토하여 심의하고, 기획조정처장은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 한다. <개정 2021.10.01.>

제3장 평가기준

제9조(교육성과) ① 교육성과는 수범, 강의, 학생지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150점 만점으로 평가하

며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산학 및 연구성과) 산학 및 연구성과는 산학교육, 산학연구 및 산학봉사, 저술 및 학술, 활동 성과로 구분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2】과 같다.<개정 2019.09.01.>

제11조(삭제) <개정 2019.09.01.>

제12조(봉사성과) 봉사성과는 교내 봉사활동과 교외 봉사활동 성과로 구분하여 13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대학발전성과) 대학발전성과는 재정지원사업 참여, 정책제안 및 대학발전기금 기여성과로 구분하여 12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4】과 같다.

제14조(재무적성과) 재무적성과는 교육투입, 교육관리 및 교육성과로 구분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5】과 같다.

제15조(비재무적성과) 비재무적성과는 계획평가, 실적평가, 참여도로 구분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6조(성과업적물 심사) ① 이 규정의 내용상 상이한 해석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해석에 일임한다.

② 성과연봉제 대상 교원은 매년 성과업적물에 따른 성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성과의 예외 평가) ① 총장은 제3조의 성과평가 7개 영역 이외에 별도로 교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총점 7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헌도 실적에 대하여 최대 100점을 가산하고 징계실적에 대하여 최대 100점 감점하여 최종 평가할 수 있으며,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교원의 전공 또는 학과가 평가시점에 편제 미완성 상태이거나 정원이 축소 및 폐지 등으로 성과업적물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필요에 따라 계열 평균값이나 단과대학 평균값 또는 대학 평균값을 적용하여 평정할 수 있다. 단, 대학재정 기여율은 예외로 한다.

③ 평가항목에 따라서는 교원의 소속학과 단위의 성과업적물도 평가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학과 평균값을 소속 교원에게 일괄 적용한다.

④ 이 규정의 내용상 상이한 해석이 가능한 조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해석에 일임한다.

제18조(누락 인정 성과업적물의 불인정) 교원의 성과는 각 행정부서에 제출된 서류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매년 정기평가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하는 관계로, 연기 또는 미제출로 인한 누락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9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교원성과 평가 결과는 교원의 성과연봉제 연봉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20조(성과평가 등급) ① 교원은 평가 결과에 따라 5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을 부여받으며, 3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은 교원에게는 S등급을 부여하고, 3년 연속 C등급을 받은 교원에게는 D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09.01.>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등급비율	5%이내	15%이내	60%~100%	15%이내	5%이내
지급비율					

② 단, 정년계열의 산학협력 중점교원의 성과평가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03.01.>

③ 교원보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에서 성과급은 교원별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비율을 차등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원별 구체적인 성과급의 지급비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처장급 이상의 보직교수의 경우, 보직수행기간 +1년까지의 성과등급은 B등급으로 한다.<개정 2019.03.01.>

제21조(평가사무의 관리) 성과평가의 총괄 사무는 기획조정처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1.10.01.>

제22조(공개금지 및 비밀유지) 평가의 결과는 대학이 정한 활용 목적 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01.>

1. (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가영역 - 교육성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대상	구분	배점
1. 수범활동 (20점)	교원의 근무 성실도 실적	개인	정량	5
	교원의 품위유지 실적	개인	정량	5
	자기개발 프로그램 참여실적	개인	정량	5
	출석부 및 성적 제출, 결강 실적	개인	정량	5
2. 강의활동 (100점)	책임 강의 학점 준수	개인	정량	5
	수업개선 노력도	개인	정량	15
	수업용 교재 개발 및 활용	개인	정량	20
	강의만족도 실적	개인	정량	10
	혁신교육 참여 실적	개인	정량	30
기타 교육활동 참여 실적	개인	정성	20	
3. 학생생활 지도활동 (30점)	학생상담활동실적	개인	정량	20
	행사지도 활동실적(비교과)	개인	정량	10
소 계			150	

[별표 2] 평가영역 - 산학협력 및 연구활동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대상	구분	배점
4. 산학교육 (10점)	산학교육 유치 및 운영 실적	개인	정량	10
5. 산학연구 (20점)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실적	개인	정량	20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개인		
	연구비 유치/수혜실적	개인		
6. 산학봉사 (20점)	대내외 산학활동 실적	개인	정량	20
7. 저술 및 학술활동 (40점)	학술논문	개인	정량	40
	저역서 (ISBN)	개인		
	학회활동	개인	정량	
	전시활동	개인		
8. 활동성과 (10점)	수상(체육)실적	개인	정량	10
	수상(공모)실적	개인		
	수상(학술)실적	개인		
	연구과제 수탁 실적	개인		
소 계			100	

[별표 3] 평가영역 - 봉사성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대상	구분	배점
9. 교내봉사 (110점)	행정보직 수행 실적	개인	정량	40
	위원회 활동 실적	개인	정량	
	진로체험 및 입시홍보 활동 실적	개인	정량	40
	입학홍보조 활동	개인	정량	
	특별위원(팀) 활동 실적	개인	정량	30
10. 교외봉사 (20점)	전문가 활동	개인	정량	20
	언론홍보 및 자문 활동	개인	정량	
	교외위원 활동	개인	정량	
소 계		130		

[별표 4] 평가영역 - 대학발전성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대상	구분	배점
11. 대학발전 기여 (120점)	국가재정지원사업 유치 및 집행 참여 실적	개인	정량	40
	국가재정지원사업 운영참여 실적	개인	정량	50
	대학발전 정책제안 제출(채택) 실적	개인	정량	30
	대학발전기금 유치실적	개인	정량	
소 계		120		

[별표 5] 평가영역 -재무적성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대상	구분	배점
12. 교육투입 (50점)	재학생 충원을 실적	학과	정량	20
	신입생 충원을 실적	학과	정량	20
	편입생 충원을 기여실적	개인	정량	10
13. 교육관리 (10점)	재학생 이탈율	학과	정량	10
14. 교육성과 (40점)	대학재정 기여율	학과	정량	10
	졸업생 취업률	학과	정량	25
	졸업생 취업유지율	학과	정량	5
소 계		100		

[별표 6] 평가영역 - 비재무적성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대상	구분	배점
15. 계획평가 (40점)	학과특성화(발전) 계획	학과	정량	40
16. 실적평가 (40점)	학과특성화(발전) 운영	학과	정량	40
17. 참여도 (20점)	학과특성화(발전) 참여도	개인	정성	20
소 계		100		

[별표 7] 평가영역 - 기여도 종합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대상	구분	배점
18. 징계 실적	경징계 및 중징계 처분 결과	정량	정량	-100
19. 공헌도 실적	대학 이미지 및 위상 제고 실적	정성	정성	100
소 계		± 100		